



STATE OF NEW YORK
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

W.A. HARRIMAN CAMPUS
ALBANY, NY 12227

보도 일자: 2013년 4월 11일 목요일
연락처: **Geoffrey Gloak, 518-457-7377**

소비자 주의보:
부도덕적인 세무 대행사들의 환급금 가로채기 행태 바로 알기

뉴욕주 납세자 권리 보호소의 **Camille Siano Enders** 씨는 오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가로채려는 유료 세무 대행사들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습니다.

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세무 양식에 익숙하지 않거나 영문 양식을 읽을 수 없는 납세자들에게 실제 환급액이 \$2,000일 경우, 환급액이 \$200라고 믿게 합니다. 이 부도덕한 세무 대행사들은 그 자리에서 납세자에게 \$200를 건네줍니다. 그런 다음 대행사에서는 자신의 은행 계좌로 실제 환급액 \$2,000가 입금되도록 처리하여 그 차액인 \$1,800를 가로채게 됩니다.

Siano Enders는 "비양심적인 세무 대행사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준비하십시오. 절대다수의 유료 세무 대행사들은 정직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납세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같은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"라고 말합니다.

납세자 권리 보호소에서는 세무 대행사 서비스 이용 시 다음 사항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.

- 서명하기 전 세무 대행사와 함께 환급금에 대해 검토하십시오.
- 빈 칸으로 남겨져 있거나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환급금에는 서명하지 마십시오.
- 적절하게 세무 대행사에서 환급금에 대해 서명하도록 하십시오.
- 세무 대행사 직원 소유의 당좌 예금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두지 마십시오. 환급금은 직접 납세자 소유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거나 [직불 카드](#)로 바로 보내도록 하십시오.
- 작성한 후 서명한 세금 서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.

탈세 또는 사기 행위 신고

세무 대행사가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십니까? 518-457-0578번으로 전화하여 불만사항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(통역사 지원 이용 가능).

자세한 정보

- [Taxpayer Advocate \(납세자 권리 보호\)](#) 웹 사이트 방문
- [multiple languages \(여러 언어\)](#)로 제공되는 세금 관련 출판물 찾기
- 스페인어 동영상의 경우 [Youtube channel \(Youtube 채널\)](#) 방문